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16~2020]

2016. 11

국 토 교 통 부

I . 계획의 개요	1
II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개요 및 평가	5
III .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변화 고찰	6
IV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추진 방향	11
V . 정책목표별 실천과제	14
목표 1. 행복한 건축 실현	14
목표 2.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23
목표 3.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31
VI . 실행체계	35

I

계획의 개요

국가 건축정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1차 계획 만료('10.4~'15)에 따라 2차 계획('16~'20) 수립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의의



- (법정계획)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종합계획) 건축 관련 산업, 경관, 환경, 에너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계획
- (전략계획) 장기적인 비전, 목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실천적 계획
- (범정부계획) 과제의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복수 부처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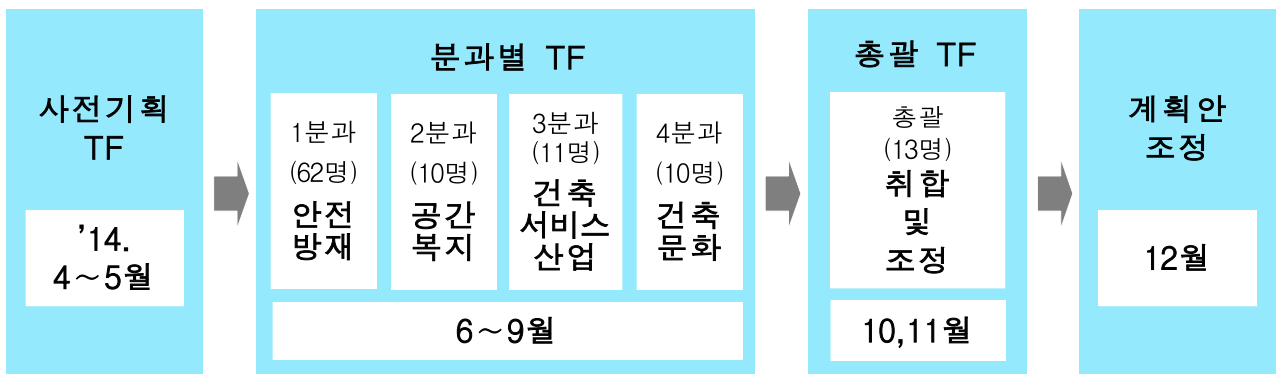
《 법적근거 》

- (건축기본법 제10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

2. 추진경위

□ 민관 합동으로 계획안 마련('14.4~12)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60개 건축 관련 학회·협회·단체 소속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여 70여 차례의 회의 등을 통해 계획(안) 마련
 - 사전기획 TF : 기본계획의 목표·전략마련
 - 분과별 TF : 목표·전략을 바탕으로 세부과제 및 사업내용 마련
 - 총괄 TF : 분과별 TF 운영결과 취합·조정하고, 계획(안) 확정



□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 (관계 부처 협의) 보건복지부,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완료(~'15.4)
- (공청회 개최) 건축·도시관련 전문가, 실무담당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부처협의를 마친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15.5.14)
- (국건위 심의) 목표, 추진전략 등을 평가하여 원안가결('15.5.22)
- (제8차 무투회의) 공공건축물 계획적 리뉴얼 추가하기로 함('15.7.9)
- (관련 국건위 포럼 결과반영) '건축산업활성화 포럼' 제안반영('15.11.6)
 -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 3D프린팅·BIM을 통한 건축산업 확장 등

□ 대통령 보고

- 계획안의 국정기조 부합 등을 중심으로 보고('16.10)

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년 ~ 2020년 (5년)
- 내용적 범위

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향상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7.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9. 건축문화 기반구축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 11. 건축정책기본계획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4. 관련계획과의 관계

- 건축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건축 관련 부문별 계획과 지역 차원에서 수립되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
 - 건축 부문별 계획 : “경관정책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등
 - 지역건축기본계획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 시장 및 군수 등이 수립하는 “기초건축기본계획”

□ 건축정책 국가계획 수립 현황

- 유럽을 중심으로 13개 국가에서 수립 시행중 :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 일본, 호주 등에서도 건축정책계획 수립 검토중

□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주체

- 정부 주도 : 네덜란드, 핀란드, 스코틀랜드
- 민간주도의 건축위원회 구성 : 영국, 프랑스, 독일



□ 시사점

- 국가 자산 및 삶의 공간으로서 건축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 부처간 협업하에 다양한 정책을 개발 중
- 초기에는 지원기구, 제도마련 등 건축인프라 구성에 집중하고, 후속계획에서 신규사업 발굴 및 문화 등과의 융합을 추진

* 네덜란드 : '91년부터 4년단위 계획수립하여 6차례 수립

- 1차(인프라 조성), 2차(건축영역 개발), 3차(시범사업), 4차(문화정책과 통합), 5차(디자인 문화 정착), 6차(디자인 실행지침 마련)

1. 제1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3대 목표, 6개 추진전략, 18개 실천과제, 113개 단위실천과제를 제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10~'15)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2. 주요 성과 및 개선 필요 사항

- (성과) 113개 실천과제 중 108개 과제(95.6%)를 완료*하였으며, 건축 발전을 위한 법령 구축, 시범사업 추진 등 정책인프라 구축에 성공

* 잔여 5개 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체계적인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건축·도시의 디자인, 에너지효율, 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관련 시범사업* 추진

*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 (개선 필요 사항) 건축물 안전, 투자활성화 등 최근 정책이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140개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필요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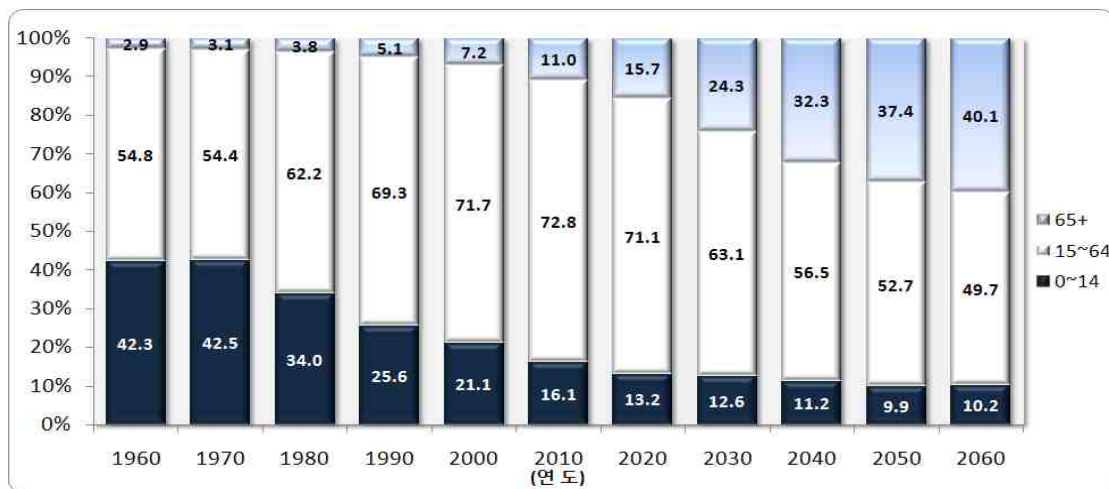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변화 고찰

① 저출산·고령화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출산율 감소**로 부동산 신축 수요 저감 예상

* 고령화율 12.7%('14) → 37.4%('50, 세계2위) ** 출산율 1.30명(초저출산 기준) 미만

*** '13년 거주지역중 '40년경 인구 감소지역(52.9%), 인구 증가 지역(29.8%) 예상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60(통계청)

② 건축물의 급속한 노후화

-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이 '20년경 50% 추정

* 29%('05) → 34%('10) → 39%('15) → 50%('20) 예상

- 건축시장에서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비중이 10%에서 선진국 수준인 40%로 확대 예상

* 서구 15개국 건설시장 분포 조사결과(건설산업연구원)

: 신규 주택 및 건축 42%, 유지보수 44%, 신규 토목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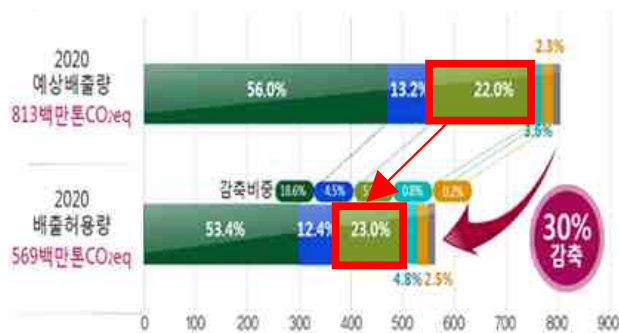
- 쇠퇴 도시 등 건축 수요가 작은 지역에서는 리뉴얼 추진 동력이 부족해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과 도시안전 문제가 우려

* '14년말 현재 전국 3,479개 읍면동 중 65%인 2,262개가 쇠퇴지역, 시·도별로는 전남(84.8%), 부산(84.6%), 서울(76.1%) 순으로 높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8.2%)

③ 온실가스 중대 및 기후 변화

-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아젠다에 따른 계획적 이행감축 필요
 -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건물부문 26.9%) 감축 목표제시
 - *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방안 검토(신기후협약, '15.12)
 - *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약 25%이며, 향후 제조업 등 산업부문은 낮아지고, 건물부문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부문별 감축목표 (산업 18.2%, 수송 34.3%, 건물부문 26.9% 등)



* 전체 : 813 → 569 백만톤CO₂eq
(감축) 244백만톤CO₂eq, 30%

* **건물부문**
(예상) 813 * 22% = 178.9 백만톤CO₂eq
(허용) 569 * 23% = 130.9 백만톤CO₂eq
(감축) 48백만톤CO₂eq, 26.9%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04~'13 연평균 28명 사망)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도 '20년 3.6조원에서 '50년 6.9조원으로 증가 예상

④ 건축 수요 다양화

-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보유 가치에서 이용가치로 변화
 - * 거주가치가 높다는 응답율 : 35.7%('10) → 44.8%('12) → 60.8%('13)
- 미혼 및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등 증가로 가족형태 다양화
 - *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 : 4.8%('80) → 25.3%('12) → 29.6%('20) → 34.3%('35)
미국 26.7%('10), 영국 29.0%('10), 일본 31.2%('10), 노르웨이 39.7%('11)
-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 보육, 교육 수요 증대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가구) × 100 = 42.9%('13 통계청)
 -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10 인구주택 센서스) : 53.9%, OECD 평균 61.3%
- 미래 주거유형으로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 증가
 - *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구수는 각각 49%, 17%이나 선호도는 41%, 45%(경기도 조사)

⑤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 소득 수준 상승으로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레저시설, 한옥 등의 수요 증가와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가치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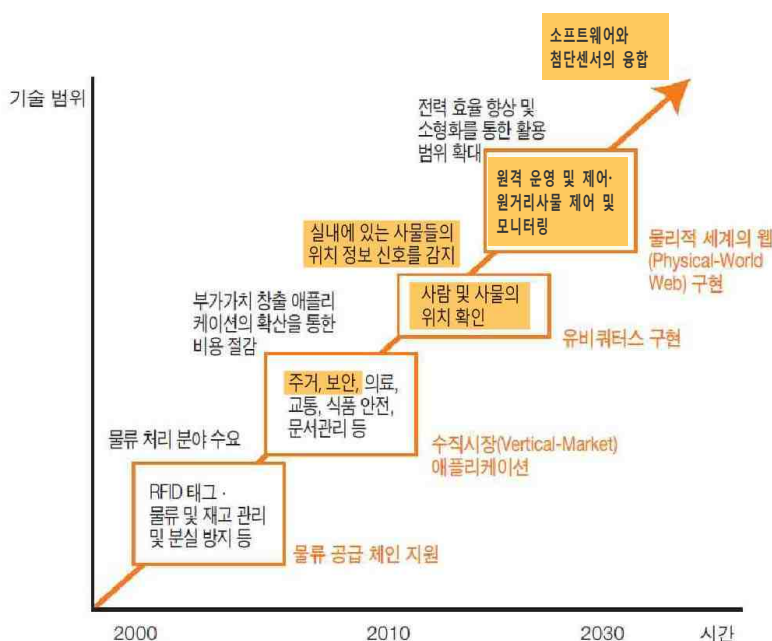
* 1인당 GDP 전망(KDI, '10) : 33,362달러('20)→60,203달러('40)

※ 국가별 경쟁력을 비교하는 척도가 경제수준에서 국민 삶의 질 수준으로 변화함
(삶의 질 연구시작 연도 : 네덜란드('73), 캐나다('99), 미국('03), EU('06) 등)

-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건축물의 실내 환경 개선 요구 증가
- 여가 행위로서 실내장식, 정원조성 등 주거활용 여가활동 증가
- 세컨드 하우스 수요(소유 또는 임대) 증가 : 8.8%('13) → 58.6%('40)

⑥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 ICT 기반 첨단기술의 발달, 신소재 기술 융합 발전 등으로 건축물 기능 확대,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 예상
 - 에너지-방범-유지관리가 자동 제어되는 스마트 건축
 - 설계,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BIM 등을 활용한 디지털 건축기술
 - 드론,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첨단 유지관리 기술 등



* IoT 발전 전망(좌, 국토연구원)
건축적용 가능한 기술

* 스마트 주거의 IoT기술

- 자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제공(건강체크 등)
- 사람의 존재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전자적인 환경(화장실 세면대, 부엌 등 높이조절)
- 사람의 행동패턴을 파악해서 미리 환경조절(냉난방 등)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재고) 약 690만 동, 총 연면적은 34.5억*㎡('14.12 기준)

* 일본(73.7억㎡, '15.1기준) 대비 1인당 1.16배, 단위국토당 1.77배의 건축물량

* '14년 한 해 약 6만여 동(0.9%) 면적 0.7억㎡(2.2%) 증가(63빌딩 313개 물량)

《 '14 전국 건축물 현황 》

(단위 : 천동, 천㎡)

구분	동수			연면적		
	'12년	'13년	'14년	'12년	'13년	'14년
전국	6,796	6,851	6,911	3,341,819	3,376,649	3,451,351
수도권	1,905	1,914	1,925	1,547,455	1,580,082	1,606,900
지방	4,890	4,937	4,985	1,794,364	1,796,566	1,844,451

○ (용도별 면적) 주거용 46.6%, 상업용 21.7%, 공업용 7.6% 등 * 일본(주거용 75.1%)

- 주거용 중 아파트가 60.7%, 단독주택 20.6%, 다가구주택 9.1%, 다세대주택 6.5%, 연립주택 2.4% 등

《 '14 용도별 건축물 현황 》

(단위 : 천동, 천㎡)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	6,911	3,451,351	4,544	1,608,411	1,174	709,840	283	349,896	182	304,410	725	478,792

(단위 : 천동, 천㎡)

구분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주거용	4,544	1,608,411	3,600	331,354	540	146,654	130	976,716	35	37,989	217	105,170	19	10,526

○ (주요건축물) 고층건축물 1,820동, 노후건축물 35.8%, 한옥 8.1%

《주요건축물 현황》

(단위 : 동)

구분	현황	비고
고층 건축물	○ 초고층(50층↑) 89동, 고층(30층↑) 1,820동 ('14) ○ 고층건축물 연평균 200동 준공('10~'14)	* 최고층 : 해운대 두산위브(80층) * 제2롯데월드(123층, 555m)는 '16준공
노후 건축물	○ 동수기준 35.8%(247만동), 연면적기준 11.7%('14) - 주거용(44.6% 동수기준) 노후비율이 가장 높음	* 분류기준 : 준공 후 30년 이상
오피스텔	○ 478,219실, 연면적 322만㎡ ('14) - 면적 30㎡미만 72.6%, 30~85㎡ 27.3%, 85㎡이상 0.1%	* (주민등록/전체실) = 43.1%(표본조사)
다중이용 건축물	○ 48,750동, 연면적 6.8억㎡ ('15.9)	* 정의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한옥	○ 564,720채(동수기준 전체건축물의 8.1%)('14) - 주거용 50만채, 비주거용 6만채	* 분류기준 : 건축물 대장상 기와지붕 + 목구조 건축물

□ 건축산업

- (규모) '13년 건축산업 규모는 약 151.3조 원(국가GDP의 약 10%)이며, 건물건설 131.5조 원, 건축서비스산업 및 유관산업 19.8조 원
 - 건물건설(주거 55.5조 원, 비주거 76.0조 원)
 - 건축서비스산업 등(건축설계 5.1조, 인테리어 0.6조, 도시·조경 0.6조 등)
- (성장률) 최근 10년간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나, 건설산업 중 건축업 비중은 지속상승(55%('09) → 57.2%('11) → 61.7%('13))

《 '05~'15 경제성장률 및 건설업 성장률 》

(단위 : 동, 천㎡)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상
GDP 성장률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2.3
건설업(건물+토목)	-0.6	1.7	2.5	-2.6	2.3	-3.7	-5.5	-1.8	3.0	0.6	0.3

- 건축허가 면적('14년 기준 141,346천㎡)은 10년간 큰 편차 없음
- (경쟁력) ENR紙*에서 발표하는 “세계 250대 건설사” 순위에 우리나라 기업 12개** 포함, “세계 150대 설계사” 순위에는 1개*** 포함

* Engineering News Record(美) : 건설사 및 설계사의 실적(매출 등) 순위 공개 전문지

** 현대건설(17위, 매출 164억\$), 삼성물산(21위, 141억\$) 등, 1위는 중국철도그룹(1,131억\$)

*** 삼우(129위, 매출 2억\$), 1위는 미국 AECOM(103억\$)

□ 건축인력

- (규모) 건축분야 종사자는 약 32.1만 명
 - * 건축설계 분야 약 4.6만 명, 시공·엔지니어링 분야 27.5만 명(기술인협회 등록인원),
- (건축사 자격) 건축사 1.3만* 명, 건축사보 3.3만 명
 - * 일본(35.9만)과 미국(23.8만) 대비 국민1인당 건축사는 일본의 0.1배 , 미국의 0.35배
 - ** 건축학과 정원(매년) 171개 대학, 6,693명
- (기술자격) 시공·엔지니어링 분야 59.8만 명(기술사 1.1, 기사 13.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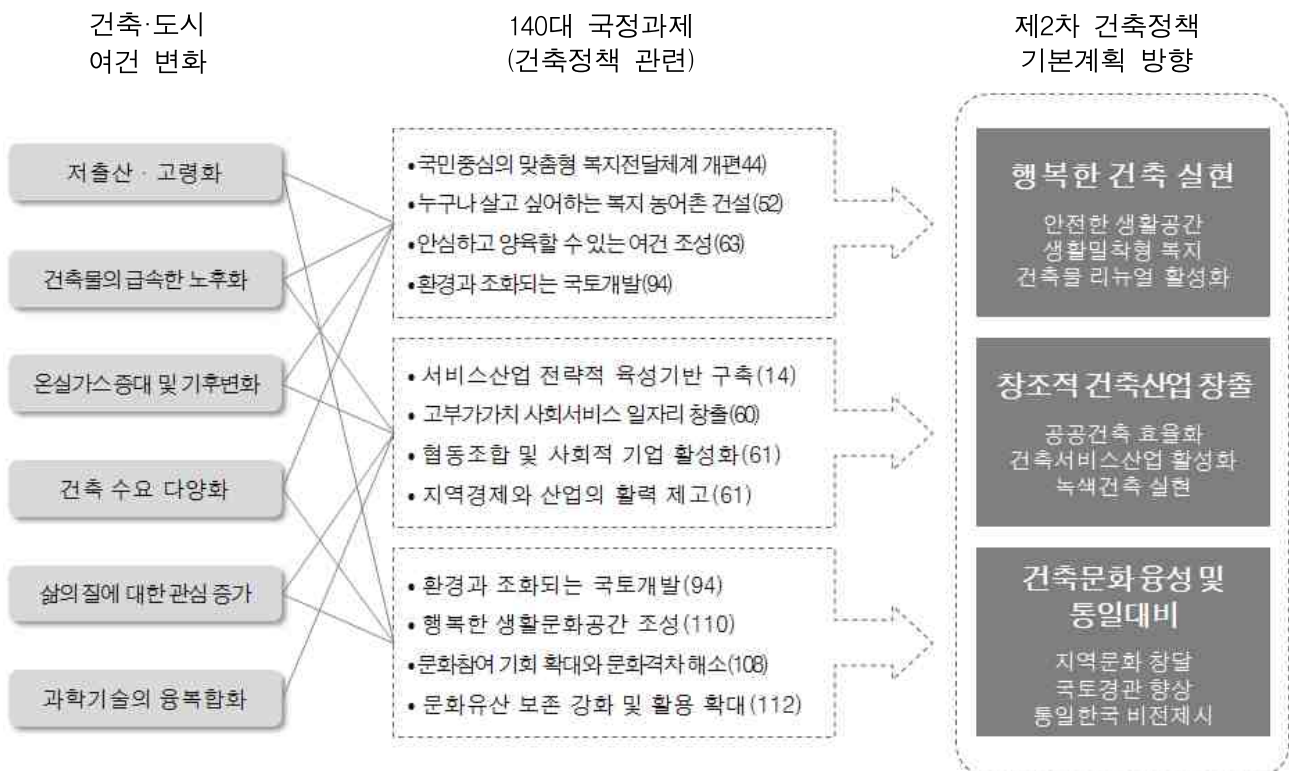
《 '15 건축사 및 기술자격 현황 》

(단위 : 명)

구분	건축사 등	건축사	건축사보	기술자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전체	46,648	13,219	33,429	597,897	10,588	135,129	82,252	67	369,861
건축설계	46,648	13,219	33,429						
건축구조				914	914				
건축설비				14,958	1,128	6,527	7,303		
건축시공				459,211	8,546	120,659	62,979	67	266,960
실내건축				50,682		7,943	11,970		30,769
전산응용건축제도				72,132					72,132

1. 기본방향 설정

- 건축·도시 여건 및 정책수요의 변화와 140대 국정과제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방향 수립



2.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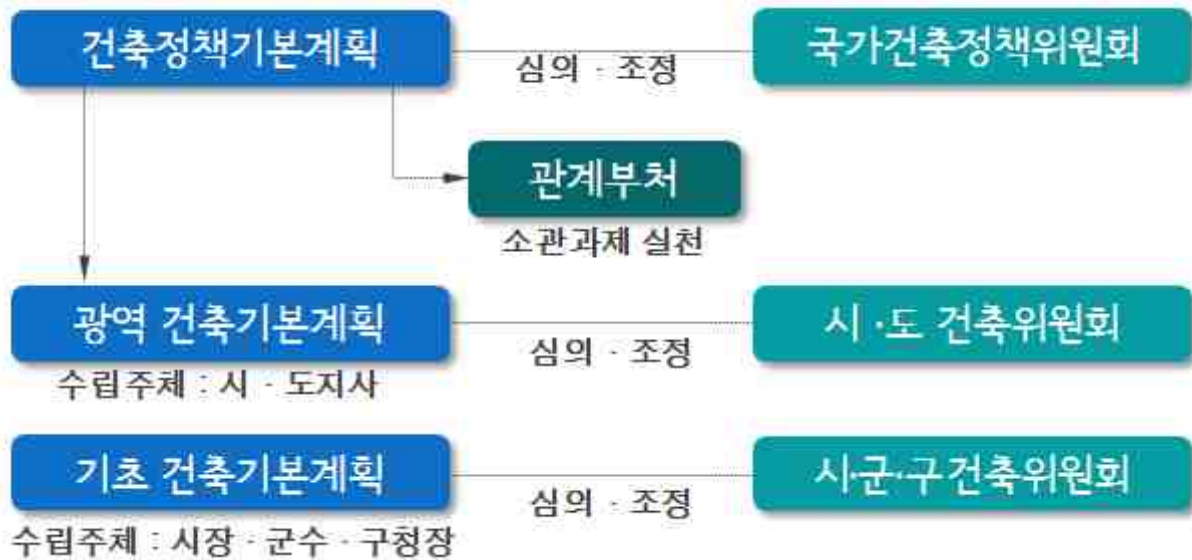
- (국민행복) 일상공간의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경제부흥) 건축서비스산업 체계 개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문화융성 및 통일대비) 건축정책과 건축도시디자인 체계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건축문화 상호 이해, 건축인프라 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기여

3. 비전 및 실천과제

-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비전 실현을 위한 3개 목표,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 도출

비전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목표	행복한 건축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추진 전략	①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① 공공건축 효율화	①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실천 과제	1-1-1. 안전한 생활공간 환경 조성 1-1-2. 건축안전 제도 기반 구축 1-1-3. 건축안전 인식 향상 및 역할 강화	2-1-1.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2-1-2.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2-1-3.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체계적 추진	3-1-1.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 3-1-2. 한옥문화의 브랜드화 3-1-3.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확산
추진 전략	②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②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② 국토경관 향상
실천 과제	1-2-1.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1-2-2.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 복지공간 조성 확대 1-2-3. 근린생활권 단위의 공간 복지시설 통합 연계	2-2-1. 건축서비스업무 발주제도 개선 2-2-2. 민간 건축시장 거래환경 개선 2-2-3. 창조적 인력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3-2-1. 경관가치에 대한 국민공감 형성 3-2-2. 경관형성·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추진 전략	③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③ 녹색건축 실현	③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
실천 과제	1-3-1.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축 역량 강화 1-3-2. 도시내 기존 건축물 유희공간 재생 활성화 1-3-3.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제공	2-3-1.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2-3-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2-3-3. 녹색건축 산업 육성 2-3-4. 녹색건축 저변 확대	3-3-1. 북한 건축문화 공동연구 3-3-2. 남북 공동 미래 도시건축 모색

4. 추진체계



① 관련 주체별 역할

- (국토교통부)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집행
- (유관 중앙행정기관) 실천과제에 따라 연차별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소요예산의 편성·집행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대한 모니터링 및 부처간 이견조정·정책갈등 해소
-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집행하며 해당 지자체 건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조정

② 주요 협업과제

- (녹색건축 활성화 : 국토부, 산자부)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녹색건축 산업 육성
- (공공건축물 내실화 : 국토부, 조달청, 행자부)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공공건축물 리뉴얼 관리 강화

목표1. 행복한 건축 실현

1-1.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 ◆ 생활안전과 관련된 건축물 규정 및 관리절차를 정비하고, 범국민적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계획 마련

1)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 ①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도시설계, 아파트 단지 및 건축 설계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확대[추진년도 '16~'19]

※ 건축물 범죄예방환경 설계(건축법 제53조2, '14.5.28)

- 범죄예방 기준 : CCTV, 투시형 담장설치, 관제실 위치,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기준 등
- 500세대 이상 아파트, 학교,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기준 적용 의무화

※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사례

- (홍은1동) 비상벨·의자를 갖춘 정(情)류장 조성
동네사랑방(호박골 사랑방) 설치
- (양재 시민의 숲) 구(區)관제센터와 연결된 ‘안전 등대’, 지식서재·카페 조성



양재 시민의 숲 <지식서재> 야간 설치 예시

※ 외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 (미국) 플로리다주 적용 결과, 범죄건수가 6,441건('96) → 3,974('05)으로 40%감소
- (영국)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목적의 ‘방범인증제도’ 시행

- ② (건축물 실내안전관리 강화) 화재, 미끄럼, 충돌, 추락, 끼임 등 실내공간 안전사고 예방 및 공기질, 소음 예방 생활환경 개선[’16~’18]

※ 실내 안전사고 현황(한국소비자원, '11~'13년)

- 어린이 안전사고 67,951건 가운데 65.6%(4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
- 노인의 경우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가정 48.8%(694건), 병원 23.7%(337건)에서 발생

※ 노르웨이 사례

- 건강·안전·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열환경, 공기질(환기, 건축자재에 의한 오염), 방음(용도별 소음기준), 실내조명(자연광, 인공조명장치) 기준을 제시 함(2010)

※ 건축물 실내건축 기준(건축법 제52조의2)

-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설계

③ (생활안전 증진사업 지원) 주민 스스로 안전위협 요인을 관리하고
행정이 뒷받침하여 안전한 마을로 만드는 시범사업* 활성화^[16~20]

※ 안전마을 시범사업(국민안전처)

- 야간 골목길 순찰, 여성·어린이 귀갓길 동행, 골목길 시설 점검 등
- 서울 은평 역촌동, 부산 연제구 연산동 등에서 시범사업 추진중

※ 지역안전프로그램(여성가족부)

- 여성 및 아동 귀가서비스, 안심 비상벨 설치, 방문순찰 등

2) 건축안전 제도 기반 구축

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허가권자에 대한 건축설계도서 검토 지원,
취약한 건축물 안전점검 후 리뉴얼 방안에 대한 건축주 컨설팅^[16~19]

※ 센터 설립재원

-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 전국적 부과건수는 약 61천건, 금액은 약 21백억원('12년말 기준)
- 시도별 부과 현황(금액 : 억원)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건수	61,438	39,492	2,449	892	1,524	2,747	267	454	8,174	575	209	754	1,572	552	462	1,031	274	10
금액	2,093	823	41	20	38	60	6	11	835	12	8	80	18	43	15	74	8	0.5

②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초고층, 대형건축물 건축시 해당 건축물
및 인접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영향을 사전에 평가^[16~17]

※ 안전영향평가 항목

평가항목 (예시)		평가방법
구조안전성		구조계획서,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평가
피난 및 대피		피난 동선 및 대피 시간 시뮬레이션 등
지반	싱크홀(지반침하)	건축물 주변 지반침하 유무 정기적 확인
분야	지하수배출	지하층 유입수(집수정) 배출량 관리

③ (시공 기록 보관) 착공신고시 지반 안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규정^[16~17]

- 주요 공정 및 매몰·사각지대를 동영상으로 기록보관, 불법 건축자재 사용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에 자재생산·유통장소도 포함

※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14.5.12)

- 시공자는 설계도서 상의 기초판의 넓이를 약 30% 줄이고, 파일개수도 약 40% 누락 하였으며, 감리자는 명백한 부실시공을 지적하지 않음



④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구축) 화재, 지진,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물 안전정보 제공 및 취약요소 사전발굴을 위한 종합성능평가 개발

- 설계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재난·재해 대응 종합안내도 작성^[18~20]

※ 일본, 수해 대응사례

- 도쿄 코다이라시, 홍수 및 호우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침수예상 구역도 제공



코다이라시 침수 예상 구역도

- 수해 뿐만 아니라, 피난장소 검색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한 방재, 방범, 교통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침수 예상구역도의 경우 총우량과 시간 최대 우량의 강우에 대응하는 위험지역 등을 표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15.1.16)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

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 소규모 건축물에 적정한 건축구조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주 직영공사시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등^[16~20]

※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 「지진·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구조안정성 향상 기술 개발」 R&D('13.5~18.7, 서울대학교 등)에서 SBC(Small Building Code) 연구

※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의 경우 건설기술자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건축법 개정 추진중)

3) 건축안전인식 향상 및 역할 강화

- ① (공공시설 활용한 안전홍보)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학교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안전에 관한 상시교육 실시^[16~20]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통계청, '14)

분야	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전반적인 사회안전	100.0	0.6	8.9	39.6	39.5	11.4
- 건축물·시설물	100.0	0.7	11.3	36.7	38.2	13.1
- 화재·산불	100.0	0.8	13.4	51.4	28.6	5.9
- 식량안보	100.0	2.9	22.2	47.0	21.8	6.1
- 국가안보	100.0	1.1	13.8	33.4	40.2	11.5
- 교통사고	100.0	0.4	6.9	36.6	42.3	13.9
- 범죄위험	100.0	0.8	8.1	26.6	43.7	20.8
- 먹거리	100.0	0.9	13.2	40.8	33.6	11.5

→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불안수준(비교적 불안 + 매우 불안, 51.3%)은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 수준(50.9%)과 유사함

- ②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개발·활용) 건축주, 건축물 이용자, 어린이 및 청소년 등 교육대상별* 교재·프로그램 개발^[17~20]

* 건축주·발주자 : 건축 행정단계별 안전점검 절차, 유지·관리 방법
 이용자 : 안전수칙, 안전사고 대응방법, 위험요소 발굴·신고
 어린이 및 청소년 : 건축안전 교육교재 개발

- ③ (건축관계자 교육 및 책임강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 단계별 안전관리 사항과 절차에 대한 교육 확대^[17~20]

- 불법 설계·시공 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

※ 불법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사례(건축법 개정 추진중)

사고	적발 회수	일반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주요구조부 붕괴)
사망사고발생	1차	1년 이내	
사망사고 미발생	1차	시정명령	6개월 이내
	2차	3개월 이내, 또는 3억원 이하	1년 이내
	3차	1년 이내, 또는 10억원 이하	-

1-2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 체계 구축

1)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① (어린이집 가이드라인 개발) 어린이집의 환경·안전에 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시범적용 추진^[17~18]

※ 미국 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
영국 교육부의 유아학교 디자인기준(Building Handbook : nursery schools)

② (생활권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도심지내 노후·불량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거나,

-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 신·증축시 어린이집 공간 마련^[18~20]

※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

- (영유아 통계) 0세 ~ 7세 연령구간 인구수 3,705,692명(매년 40~50만명 출생)
- (어린이집 통계) 19,276개소, 68.6만명('00) → 43,770개소, 148.7만명('13)
 - 국·공립 2,332개소, 15.4만명(10.4%), 민간 14,751개소, 77만명(51.8%) 등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정부가 제시한 30%수준으로 올리려면 5,710개소 신축필요

③ (노후·낙후 학교시설 정기점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정 수준 이하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17~20]

※ 내진설계 대상인 학교 건축물 26,980동 중 7118동(26.4%)만이 내진설계가 됨

④ (학교의 복합적 활용) 학교 신축 시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과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16~20]

※ 동탄 2 신도시 시범단지내 초등학교 복합화 사례('16년 상반기 준공 예정)

- 학교부지내, 교사시설(12,506㎡)과 커뮤니티 시설(10,392㎡) 함께 건축
- 커뮤니티 시설 : 1층 어린이집, 2층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 교실,
3~4층 어린이 열람실을 포함한 복합도서관
5층 다목적 강당
-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방과후와 주말에 시민에게 개방

2)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공간 조성 확대

① (무장애 설계 적용) 도시 및 건축물 설계시 고령자를 위한 복지공간의 무장애 설계(barrier free)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18~20]

- 향후, 고령자·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13-8호, 2013.12.24.)

- 도시구성체계 : 공원·녹지 연계방안, 교통시설 접근성 및 연계성 등
- 보행네트워크 : 보행망 네트워크, 보차공존 도로 등
- 도시관리 : 장애물 없는 도시조성에 관한 지침·조례 등

☞ 도시차원의 평가로 건축물 차원에 대한 평가 미흡

② (시설확충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생활하기 편리하고 의료, 안전, 단체급식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18~20]

- 노인복지시설 냉난방 환경 개선을 통해 혹서·혹한 환경에 대응

※ 우리나라 고령화 전망, 관련시설 현황

- (고령화 진행)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00년 7%(고령화사회 진입), '14년 12.7%, '17년 14%(고령사회 진입), '26년 20%(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노인복지시설 현황) 65세 이상 인구 625만 명 대비 노인복지시설 수는 72,800개 (174,600여명 수용·이용 가능)로 약 2.8%수준에 불과함 ('13년 기준)

※ 일본의 고령자 종합복지 서비스 시설

- (유이마루이가와다니) 고령자용 주택과 노인시설을 일체로 공급, 무장애공간으로 설계
- (비바스니신마치) 주택공급공사와 민간병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요양병상 85개의 민간병원과 고령자임대주택 55호, 일반 임대주택 10호를 복합하여 공급

3)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시설 통합적 연계

①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 계획) 도보 10분내 근린생활권 단위로 공간복지시설* 수요 기준 마련^[18~20]

- 저이용·미이용 국유지를 활용** 하여 복지시설 제공

* 문화회관, 독서실, 강연장, 장애인시설, 경로시설, 공연장, 체육시설, 공원 등

** e나라재산(기재부)에 따른 국유지 24,521km²중 이용가능 토지 발굴

② (주택공급과 연계한 공간복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시 공간복지시설과 복합화^[18~20]

※ 영국, 주빌리 도서관 재건축

: 영국의 경우 공공청사 재건축시 소규모 임대주택과 생활문화시설의 복합건물로 재건축



1. 도서관 + 일부주민시설
2. 광장
3. 상업시설 위 주거시설
4. 상업시설 위 사무공간
5. 카페, 레스토랑
6. 호텔

1-3.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 주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내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만들고, 그 활용모델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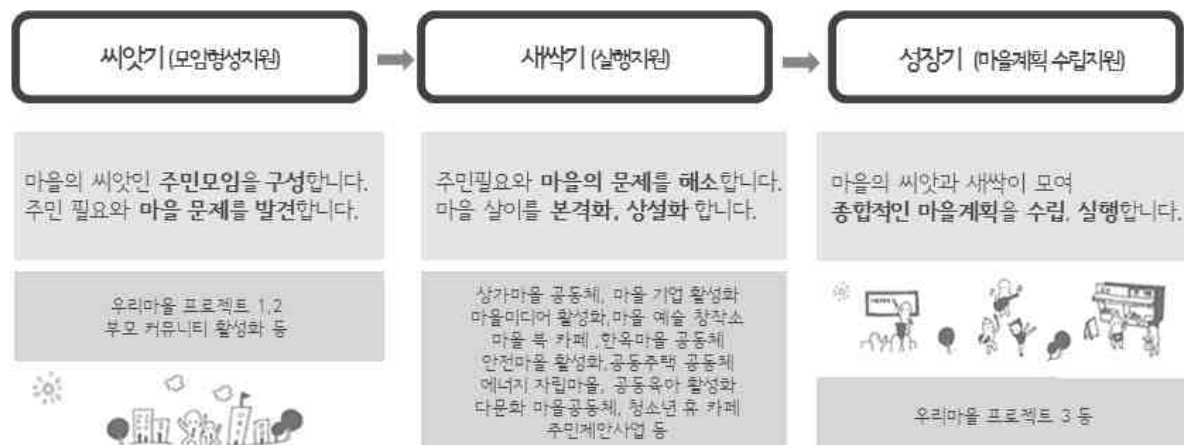
1)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축 역량 강화

- 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주민참여 확대) 아이디어 제안공모 및 예산편성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침 마련^[18~20]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한국형 도시재생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14년도부터 13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시행 중

※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사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마을활동가 교육 및 연구, 마을 상담, 주민제안사업 컨설팅 등 마을사업의 기획 및 경영, 지속을 위한 지원업무 수행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사업

② (건축 코디네이터 지원) 경관협정, 건축협정 등 주민참여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18~20]

※ 민간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 (개요) 지역의 건축·도시 정책수립 및 관련 사업의 자문을 수행할 ‘지역총괄계획가’를 선정하고, 2년간 지역총괄계획가의 인건비 및 여비 등을 지원
 - * (1년차) 국비 약 4천만원 지원, (2년차) 국비 약 2천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추진현황) 15년 8개 지자체* 사업 진행 및 16년 지원 지자체 4개소 선정 절차 진행중
 - * 서울 서대문구, 경기 평택시, 대구 남구, 세종시, 인천 옹진군, 전북 임실군, 전북 익산시, 강원 평창군

③ (지역업체 역량 강화) 마을기업, 소규모 집수리 업체에 대한 기술 강화 프로그램 지원, 주택 개량 수요자와 업체 연결 지원^[20]

※ 주택관리지원센터(건축법 제35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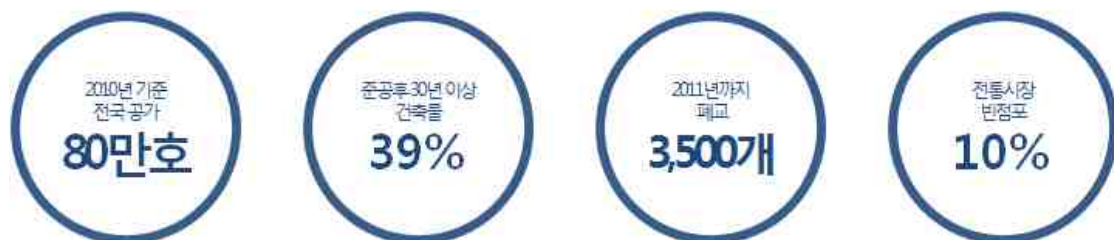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④ (농어촌 건축 리모델링 지원 확대) 폐·공가 정비, 노후주택 단열 성능개선, 담장 및 지붕개량, 농어촌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17~20]

2) 도시내 기존 건축물 유희공간 재생 활성화

- ① (현황관리 체계 구축)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에 유희상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GIS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관리^[17~19]
- ‘방치건축물정비법’을 확대시켜 공폐가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 공폐가 지역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도시 내 유희공간의 급증



- 전국의 공가(빈집)수 약 800,000호(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준공후 30년 이상 건축물 39%(감사원 보고, 2005년)
- ‘11년까지 3,500여개 폐교, 전통시장 점포의 10% 공점포(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2010년)

② (유휴공간 활용모델 개발)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 시범사업을 지원,
[17~20]

※ 영국의 공가재생 지원 프로그램(Empty Homes Programme)

- 영국 내 쇠퇴지역 내 공가 73만 호(전체 주택의 3%)를 재이용 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주택공급, 홈리스 문제 해소, 근린의 쇠퇴 방지 목적
- 2011년에 국가 주택 정책(Housing Strategy)에 1억 파운드 재정지원, '15년 3월까지 최소 3,300여 호의 공가 재생 발표

3)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제공

① (유휴공간 활용한 소규모 커뮤니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공간, 장난감 대여소 등 다양한 세대가 상호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19~20]

② (폐교를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농어촌 교육 전문지원센터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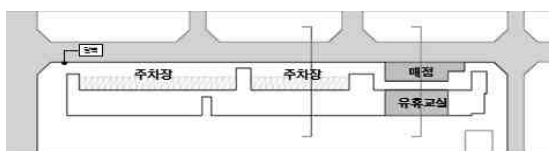
※ 강원도 평창 감자꽃 스튜디오(폐교 활용 사례)

- 강원도 평창의 폐교(옛 노산분교)를 개조하여 문화, 창작, 교육공간으로 활용
- 주민, 청소년,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행,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등의 지역 연계사업 실시



※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복지시설 조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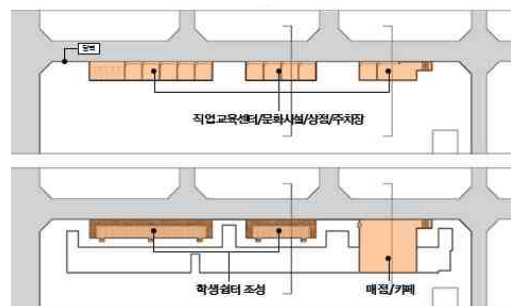
- 초등학교의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직업교육센터, 학생쉼터 등으로 조성하여 활용



[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 계획안]

(위: 기존, 오른쪽: 변경안)

기획재정부(2014)



목표2.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2-1. 공공건축 효율화

- ◆ 공공건축의 기획·발주 절차를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1)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 ① (사전기획업무 강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을 중·소규모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16~20]

※ 총사업비 100억미만의 공공건축사업은 사업건수 기준 전체의 95%이상

총 공사비(억원)	'13년기준	검토제도		
500 ▼	38건 0.28%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 이상 재정지원 300억 이상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200 ▼	95건 0.70%			현재적용
100 ▼	148건 1.10%			
50 ▼	299건 2.22%			
0 ▼	12,910건 95.70%			확대적용

<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사업

- ②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공건축의 기획단계에서 이용단계에 이르기 까지 개별로 운영되었던 평가·관리 제도*를 연계하여 총괄관리^[18~20]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사업계획사전검토, 총사업비관리, 사후평가 등

- 기존 공공건축물의 관리·활용 등에 관한 정보체계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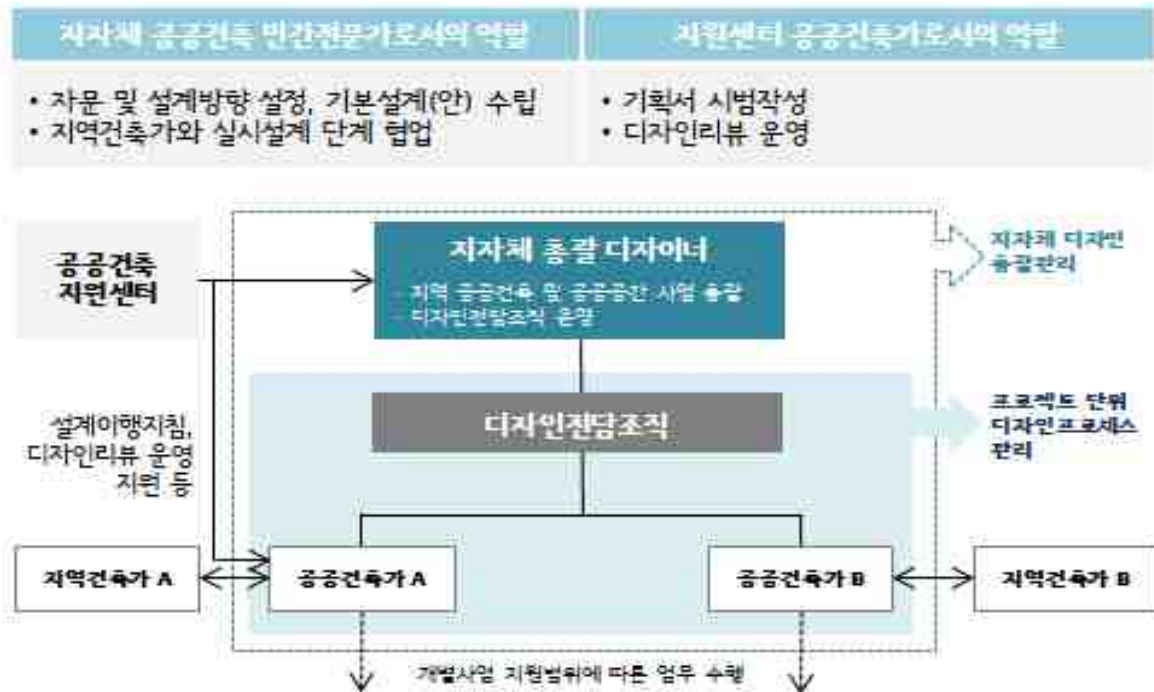
- ③ (총괄조정체계 구축) 각 부처별 공공건축 제도 및 조성정책의 연계 및 조정, 공공건축물 발주에 관한 통합 기준 마련, 정보 일원화 체계 구축^[19~20]

2)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 ①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확대) 공공건축 전담부서가 부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공공건축가 지원^[17~20]

* 공공건축물의 설계방향 설정 및 자문 역할

※ 공공건축가의 역할(안)



② (공공건축 업무 지원체계 강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및 예산 신청 등에 대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지원·대행 기능 확대^[17~20]

-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별도용역으로 외부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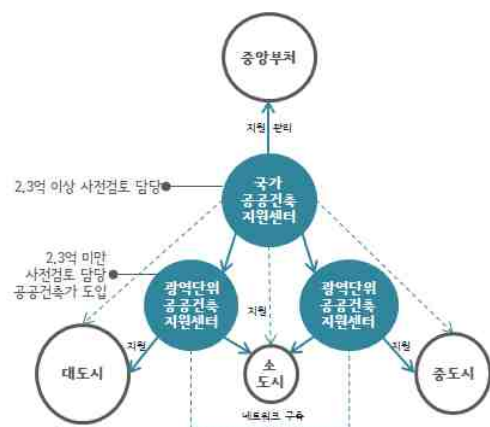
③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광역 단위로 설립·지정하여 관할지역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각종 지원업무 수행^[19~20]

※ '13.5 현재 공공건축물은 약 15만동이며, 매년 약 6천동의 공공건축물이 신축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업무(안)

- 사업필요성 판단 및 자문
- 적정 입지선정, 시설용도계획, 시설규모 및 프로그램, 예산계획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발주방식 결정, 설계용역 계약, 시공 수행계획 등에 대한 자문
- 디자인·경관계획에 대한 자문
-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자문

※ 국가-지역 센터 업무체계(안)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국가센터로 지정됨

- ④ (지자체 공공건축 발주부서의 전문직 확대) 지역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등의 임시직 채용 기회 확대^[18~20]
- ⑤ (예산책정 지원체계 구축) 공공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의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지원^[18~20]
- 공공기관에서도 소관 공공건축을 총괄조정하는 공공건축가* 위촉

3) 공공건축물 리뉴얼 체계적 추진

- ① (리뉴얼 진단) 준공연도, 재난안전성, 사용성 등 건축물의 성능과 주변여건, 소관부처 추진계획 등 리뉴얼 관련 현황을 파악^[16~20]
- 공공건축물에 대한 DB 구축 및 정보공개 추진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 (국유)공공건축물

- (세움터 조사자료) '15년 현재 약 21,000동

구분 연도	동수(동)		연면적(천㎡)	
	신규편입	누적	신규편입	누적
2015	-	21,126	-	19,692
2016	1,282	22,408	1,883	21,575
2017	1,561	23,969	8,278	29,853
2018	1,583	25,552	2,335	32,188
2019	1,347	26,899	4,144	36,332
2020	1,572	28,471	2,367	38,700
2021	1,938	30,409	4,509	43,209
2022	3,417	33,826	16,598	59,807
2023	3,097	36,923	7,620	67,427
2024	4,153	41,076	21,831	89,259
2025	5,151	46,227	16,361	105,619

- (기관 조사)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축물은 '15년 현재 약 13,000동

- 교육부 12,320
- 미래부(우정사업본부 포함) 182
- 보건복지부 361
- 산림청 47 등

- 리뉴얼 계획이 있는 건축물 468동

- (관리대상 설정필요) 세움터와 기관조사 결과가 상이하여 관리대상 파악 필요
- (리뉴얼 총괄계획 필요) 매년 1,000동 이상이 30년이상 노후공공건축물로 신규 편입되나, 리뉴얼 계획은 이에 미치지 못해 누적 노후공공건축물 지속증대 우려

- ②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연차별 리뉴얼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공공기관별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16~20]
- 민간투자를 활용한 복합개발(예: 행정시설 + 주민커뮤니티시설 + 상업시설) 추진,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사례로 보급

2-2.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 건축서비스업무 조달제도를 개선하고, 실무중심의 인력을 양성하며,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1) 건축서비스업무 발주제도 개선

① (기술력과 창의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 건축사의 설계 대가기준 현실화, 국가·지방 계약법 상 ‘지식기반사업’*에 건축서비스업 포함^[16~20]

- 설계자 선정 세부기준에 선진 기술(3D 프린팅, BIM 등) 사용, 유사업무 수행실적 등을 반영

* 정보통신산업, 엔지니어링산업 등 국가·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사업으로서, 경쟁 입찰시 최저가 등의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제적 가치

-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일반제조업의 1.4배)와 취업유발 효과(일반제조업의 1.9배)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구분	부가가치 유발효과 (1,000억 투자시)	취업유발 효과 (1,000억 투자시)
건축서비스 / 제조업	900억 / 626억	1,705명 / 920명

②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설계 단계별 업무 및 행정절차 명확화, 의사결정과정 명문화^[16~20]

※ 건축서비스산업 수주 및 계약현황(서비스산업실태조사, '15)

- (주요 의뢰주체) 개인의뢰(80.0%), 건설사 외 민간기업(38.5%), 지방행정기관(32.1%), 건설사(23.0%), 설계·엔지니어링 회사(13.1%) 등(중복응답)
- (계약형태) 민간사업 매출액의 84.0%, 공공사업 매출액의 38.9%가 수의계약
→ 개인의뢰, 수의계약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 절차 등의 마련·보급 필요

③ (적정 보상비 책정) 설계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가 지급기준 명확화, 투입인원과 비용 근거의 설계비 산출제도 확립^[17~20]

※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는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 도입('12)

- ④ (건축 엔지니어링 계약체계 개선) 건축설계에 참여하는 구조, 조정, 기계, 전기 등 엔지니어링 업체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17~20]
- 건축엔지니어링의 법적 정의 및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설계 계약서 및 인허가 도서에 건축엔지니어의 과업 비중을 명시

2) 민간 건축시장 거래환경 개선

- 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계약제도 합리화) 설계 수행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건축사의 책임을 강화^[17~20]

※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정책(서비스산업실태조사, '15)

- '공정한 계약체계의 성립' 33.3%, '소규모 신진업체 육성기반마련' 24.4%,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18.4% 으로 조사됨

- ② (건축사 업무범위 다양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의 종류 구분^[17~20]

- 기본업무 : 건축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등 최소 업무
- 추가업무 : 녹색인증제도, 실내디자인, IT, 시공관리 등

- ③ (건축 엔지니어링 책임 강화) 실제 도면 및 서류 작성자(건축사, 기술사 등)가 수행한 업무(구조, 기계, 전기 등)에 대해 최종 책임^[18~20]

※ 현재는 법정 건축사 대표가 책임의 주체

3) 창조적 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 ① (실무중심 교육·자격제도) 대학 이수교과와 실무의 연계 강화, 설계와 공학 사이의 교류 확대, 건축사 자격시험방법 개선^[17~20]

- 대학에서 실무에 필요한 발주제도, 법규, 설계비 책정 등을 교육
-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무중심·수시응시로 전환 검토

※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의 인원 충원 계획(서비스산업실태조사,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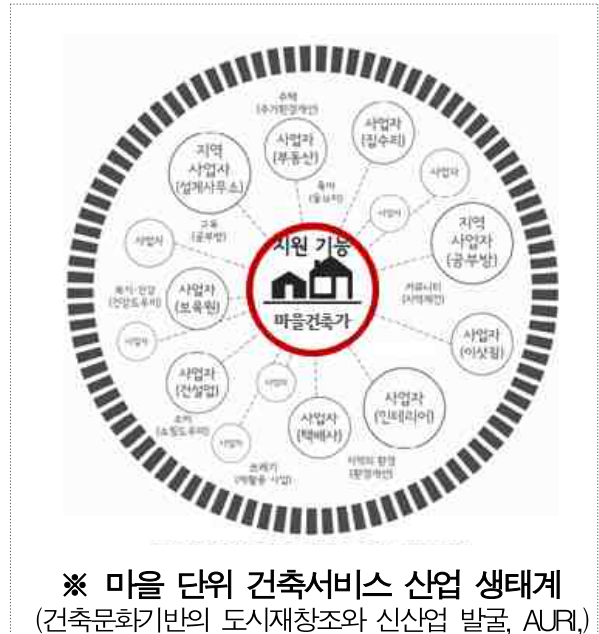
- '향후 2년 이내 충원계획이 있음' 28.4%, '현재 인원유지' 67.7%
- 신규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주 사유로는 '임금 등 근로조건 미충족' (40.6%)과 '업체가 요구하는 경력·자격·학력 지원자 부재'(34.1%) 순으로 나타남
-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대학에서 충분하게 배우지 못함

② (마을단위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신진건축사 등을 마을 건축사로 선정하여 마을에서의 재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컨설팅

[18~20]

- 마을 건축사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건축문화 기반의 지역 재생 추진



③ (국제 경쟁력 강화) 성능기반의 설계·시공을 도입하고, 초고층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 '글로벌표준'을 제정하여 해외에 보급[16~20]

-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안내하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설계자·시공자의 편의와 업무효율 증진

※ 건축서비스산업 국제사업 현황(서비스산업실태조사, '15)

- (사업경험)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중 2.5%가 국제사업 수행 경험 있음
 - (주요분야) 실시설계 30.6%, 기본·계획설계 16.5%, 감리·CM 8.5% 등
 - (희망지역) 아시아 70.8%, 중동 22%, 유럽 18.6% 등(중복응답)
- 주요분야 및 희망지역을 고려한 전문교육 필요

④ (개발도상국 건축시장 개척) 건축 전문인력 파견 등 시장개척지원[16~20]

- KOICA 봉사단 및 KSP*사업 등에 건축·주택 전문가 파견

※ Knowledge Sharing Program(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기재부)

- '04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공여 규모에 맞추어 KSP협력 대상 국가 수 및 예산 증가

구분	'08	'09	'10	'11	'12	'13
정책자문국가수	8	11	15	26	33	35
협력 국제기구 수	-	-	-	4	4	6
예산(억원)	25	50	73.5	140	233	231

- 개도국 인프라 개발계획 지원시 건축사업을 패키지로 결합

2-3. 녹색건축 실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건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건축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

* 건물부문 감축목표 : '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45백만톤) 감축('09)

**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국가전체의 약 25%(138.7백만톤, '11년)로 산업 부문(50%)에 이어 2위이며, 선진국 수준까지 비중증가 예상(선진국 약 40%)

1)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기준 선진화

① (국민체감형 기준마련) 단열·기밀 등 건축물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패시브 주택 의무화, 에너지소비 총량제 확대 시행 [16~20]

②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25년 의무화를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 인증제 등 관련제도 정비, 공공건물 단계적 의무화 추진 [16~20]

* 저층형(5개소, '14년 지정), 고층형(2개소, '15년 지정), 단지형(1개소, '16년 지정)

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①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이자지원사업 지속적 확대 추진,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물의 가치평가 기준 마련 [16~20]

- 에너지성능이 건축물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 이행시 건축물대장에 반영하여 시장가치 제고

※ 영국, 그린딜(Green deal) 프로그램

- (추진개요) 기존 건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딜 기본법 제정('12)
- (기본개념) 민간금융을 사용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한 공사비 지원해주고, 수혜자는 매달 에너지 절감액을 통해 공사비를 상환하는 제도
- (절차) 건물 이용자가 평가의뢰 → 그린딜평가사 평가 및 권고보고서 작성 → 공사비 지원 기관 선정 → 공사 → 공사비 상환(월 난방비 등에 합산청구)

② (인증기준 개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인증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기준 개선 및 인센티브 발굴 [16~20]

3) 녹색건축 산업육성

- ① (전문기업 및 인력 육성)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정 및 육성 확대, 녹색건축 전문가 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16~’20]
 - 그린리모델링 통합브랜드 홍보 추진,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녹색건축 인증 전문가 육성
- ② (운영관리 기술개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공공건축물 등에 BEMS 도입 지원 [‘16~’20]
 - 에너지데이터 분석 절차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단위 건물별 BEMS 시스템 운영 지원
- ③ (공공부문 선도사업)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 등 강화된 건축기준 공공건축물 우선 적용,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저효율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성능개선 추진 [‘16~’20]

4) 녹색건축 저변확대

- ① (부처간 협업 추진)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거래*(산업부), 감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환경부), 공공기관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의무화 등에 대해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추진 [‘16~’20]
 - * 태양광 등 소규모 전력생산 설비의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분산자원 중개시장’(‘17 개설)에 제로에너지빌딩 생산전력도 거래되도록 하여 전력비용 절감 유도
 - ** 녹색건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감축량 산정(건축물에너지 DB활용)을 위한 방법론 및 감축사업 모델 개발 및 등록(환경부)
- ② (정보체계 강화) 녹색건축 시장가치 반영을 위해 「국가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15.9 구축)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공개하고, 녹색건축 임대동향, 관리비 비교 등 새로운 지표 개발 [‘16~’20]
- ③ (홍보) 「녹색건축한마당*」 등 녹색건축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 매년 녹색건축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전시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종합행사

목표 3.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3-1.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 한옥을 실용화하여 보급하고,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 및 한옥의 브랜드화를 통해 건축문화 기반의 관광산업 육성

1)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

①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도가 실시하는 기초조사 정보 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 지원^[16~20]

※ 건축자산 :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

- 정보체계 구축·운영 상 필요 지침 및 관련 비용 지원방안 검토 등

②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지정구역 내 수리·관리를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관리지원센터 운영^[18~20]

2) 한옥문화의 브랜드화

① (국민 공감 한옥 유형 개발) 적정 건축비로 현대 주생활에 적합한 고밀도, 다층 복합용도의 신한옥 모델 개발^[17~20]

- 한옥에 적합한 자재·규모·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지원에 관련한 규정 마련

※ 한옥 확산을 위한 숙제

- (비용절감) 1급 전통한옥 표준단가는 350만원/㎡이나, 1급 신한옥 표준단가는 267만원/㎡로 24%저렴(2013, 한옥건축산업 동향)하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 필요
- (민간수요발굴) 전통양식 수주액 현황 조사결과 주로 공공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의 경우 계속 감소하는 등 민간수요 증대를 위한 전략 필요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66,699	59,542	41,008	49,555
공공부문	24,332	42,715	24,923	38,535
민간부문	42,367	16,826	16,085	11,020

- ② (한국적 공간 브랜드화 지원) 한옥의 고유한 공간요소인 ‘마당’, ‘대청’, ‘담’ 등에 대한 디자인 매뉴얼 제작, 국내외 홍보 강화^[17~20]
- 한국적 공간의 우수사례 시상·전시 및 해외 공관 설계시 적용, 한옥마을 조성 및 ‘한옥마을 가이드라인’ 수립

※ 한국적 공간요소의 브랜드화

- ‘11년 영국 첼시플라워쇼에서 황지해 작가가 ‘해우소’를 출품해 Artisan Garden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
- 한국적 공간의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 홍보가 필요한 시기



해우소(‘11년 첼시 플라워쇼 출품작)

3)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확산

- ① (프로그램 다변화) 건축교육 전담기구 설립, 초·중·고등학교 제도 교육 교과목에서의 건축·도시 관련 내용 콘텐츠 개발과 주기 점검^[17~20]

※ 외국의 건축관련 교육제도

- (전문기관) 영국의 공간환경교육 통합네트워크(Engaging Places), 미국의 건축과 디자인교육 네트워크(A+DEN) 등 지역별 건축교육 전문기관 운영
- (학령기 대상 교육) 미국, 유치원~12학년까지의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일반인 대상 교육) 일본건축가협회, 주택의 구입·관리 관련 필요내용 강의

- ② (건축문화 기반 관광산업 육성) 지역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건축문화지도 제작, 숙박시설 유형 개발, 공공시설 디자인 적용^[18~20]

※ 건축의 도시이미지 형성

- (설문조사) 도시 이미지 형성에 영향력이 큰 요소는 건축물(74.7%), ‘09, AURI조사
- (사례) 덴마크 왕립도서관은 신축도서관의 현대적이고 화려한 외관과 구 도서관과의 결합을 통한 독특한 전경이 도서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관광의 거점을 함



‘99완공 덴마크 왕립도서관(신관과 구관(좌), 신관 내부(중), 신관 외부(우))

- ③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교육, 전시, 홍보, 연구, 수집의 중심 기능 수행, 건축체험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여 교육수요에 대응^[18~20]

※ 국외 건축박물관 관련시설 건립현황

- (건축박물관) 네덜란드 건축관(NAI), 스웨덴 건축박물관, 독일건축박물관(DAM), 프랑스 건축 및 문화유적 박물관, 스코틀랜드 라이트하우스, 영국 왕립건축가협회, 핀란드 건축박물관, 이탈리아 21세기 국립예술박물관(MAXXI), 캐나다 건축센터(CCA), 미국 국립건축박물관(NBM), 에도도쿄 야외박물관, 에도도쿄박물관, 오사카역사박물관, 오사카시립주택박물관
- (도시홍보관) 파리 아스날관, 상해 도시모형전시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 (건축아카이브)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물 보관소

3-2. 국토경관 향상

◆ 경관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 기반구축

1) 경관가치에 대한 국민공감 형성

- ① (경관가치 인식 확산 및 국민참여 활성화) 국토경관 인식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마을경관 가꾸기 운동 추진^[17~20]

※ 경관 관련 현황

- (경관협정) '15년 국토교통부에서 「경관협정 활성화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주민이 주도하는 경관협정은 25개소에 그침
- (경관인식조사) 대국민조사 결과 국토경관에 대해 81%가 '전반적으로 아름답다', '자연경관'은 60%가 아름답다고한 반면 '도시경관'은 68%가 열악하다 응답('14, AURI)

- ② (국토경관자원 발굴 및 대표경관 형성) 한국 대표경관 선정 및 홍보, 국가상징 경관사업 추진^[17~20]

2) 경관형성·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① (경관관리 역량강화) 경관개선효과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시행, 전문성강화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보완 등 인력 양성^[18~20]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

- 경관관련 시설물의 재료개발, 전선·통신선의 지중화 등 기술개발

- ② (경관행정 기반구축) 경관제도(계획, 사업, 심의)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민간전문가제도 활성화 등 지자체 역량 제고^[18~20]

※ 107개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중, 143개 지자체에서 경관조례를 제정·운용, 110개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 운영(2015년 6월)

3-3.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

◆ 북한의 건축문화자산 및 미래 건축·도시방향 연구

1) 북한 건축문화 공동연구

- ① (북한 건축자산 공동 실태조사) 건축문화자산 및 근·현대 건축물, 북한건축문화에 대한 공동연구^[19~20]

※ 남북 공동으로 금강산 내 사찰(신계사) 복원사업을 추진('04.11~'07.10)

- ②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정체성 및 가치 공유^[19~20]

※ 북한의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 : 고구려 고분군('04), 개성의 역사기념물과 유적('13)

2) 남북 공동 미래 도시건축 모색

- ① (DMZ 공동 개발사업 추진) 설치미술, 공원조성 등 추진 등 DMZ내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행^[19~20]

※ DMZ는 백남준, 다니엘리베스키트를 비롯한 미술작가와 건축가들의 전시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real DMZ'이라는 설치미술작업이 DMZ현장에서 진행중(~'15.11)

- ② (미래도시 개발) 지역특색 반영한 도시 및 광역교통 구축방향 연구^[20]

※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개선R&D 기획연구('15.8~)

- 북한의 건축산업 현황조사 및 분석
- 통일 시 북한 건축인프라 개선 수준 및 목표설정
- 정치·사회·기술적 여건을 고려한 북한 인프라 개선 마스터플랜 마련
-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범위설정
- 개발기술 적용 타당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추진 방향제시

VI

실행체계

1. 실천과제별 로드맵

① [정책목표 1] 행복한 건축실현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부처	협조부처	실행시점				
				'16	'17	'18	'19	'20
1-1.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1)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①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확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② 실내건축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③ 생활안전 증진사업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					
2)건축안전 제도기반 구축	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②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③ 건축물 생애주기 정보구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정보통계담당관					
	④ 공간위계별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⑤ 소규모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안전제도과					
3)건축안전 인식향상 및 역할 강화	①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한 안전홍보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② 교육대상별 건축안전 프로그램 개발·활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③ 건축안전 관계자 안전관리 교육 및 책임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부처	협조부처	실행시점				
				'16	'17	'18	'19	'20
1-2.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1)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① 국공립 어린이집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적용 추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② 생활권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③ 노후·낙후 학교시설 정기 점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교육부 교육시설과					
	④ 학교시설 복합화 및 지역 커뮤니티 거점 활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교육부 교육시설과					
2)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공간 조성 확대	① 무장애 설계 적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② 시설확충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시설확충)					
3)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시설 통합 연계	① 근린생활권 단위의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제도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② 주택공급 사업 등과 연계한 복지통합형 공간복지 시설 공급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1-3.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1)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축 역량 강화	① 공공건축 연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주민참여 확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② 건축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증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③ 소규모 집수리 지역업체 역량 강화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④ 농어촌 건축리모델링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도시내 기존 건축물 유희공간 재생 활성화	① 유희공간 현황관리 체계 구축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② 유희공간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의 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3)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제공	① 유희공간 활용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확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② 폐교를 활용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활용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교육부 교육시설과					

② [정책목표 2]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부처	협조부처	실행시점				
				'16	'17	'18	'19	'20
2-1. 공공건축 효율화								
1)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① 공공건축 사전기획업무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조달청					
	② 공공건축 성과관리체계 구축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	시설사업기획과 조달청					
	③ 공공건축 조성 업무의 총괄조정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시설사업기획과 조달청					
2)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①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확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	-					
	② 공공건축 업무 지원체계 강화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	-					
	③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④ 지자체 공공건축 발주부서의 전문성 확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⑤ 건설공사 예산책정 지원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3) 공공건축물 리뉴얼 체계적 추진	① 리뉴얼수요 등 현황 파악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② 연차별 리뉴얼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2-2.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1) 건축서비스업 발주제도 개선	① 기술력과 창의력 중심으로 설계자 선정방식 전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조달청 건설용역과 기획재정부					
	②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계약제도과 기획재정부					
	③ 적정 보상비 책정 의무화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계약제도과 기획재정부					
	④ 건축 엔지니어링 업무 계약체계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계약제도과 기획재정부					
2) 민간 건축시장 거래환경 개선	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					
	② 건축사 업무범위 다양화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					
	③ 구조, 설비 등 ENG 분야 책임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국토교통부					
3) 창조적 인력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① 교육·자격제도를 실무중심으로 개선	대학정책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② 마을단위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지역경제과 고용노동부					
	③ 건축전문가 국제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인적자원개발과 외교부					
	④ 개발도상국 건축시장 개척 추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개발협력과					
2-3. 녹색건축 실현								
1)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① 국민 체감형 녹색건축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②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 품질 강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	-					
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①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② 기존 건축물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					
3) 녹색건축 산업 육성	①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②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③ 공공부문 녹색건축 선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4) 녹색건축 저변 확대	① 녹색건축 협업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	-					
	② 녹색건축 정보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	-					
	③ 녹색건축 홍보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③ [정책목표 3]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부처	협조부처	실행시점				
				'16	'17	'18	'19	'20
3-1.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1)건축자산의 가치 증진	①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②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2)한옥문화의 브랜드화	① 국민 공감 한옥 유형 개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② 한국적 공간 브랜드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3)건축문화교육 및 홍보 확산	①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변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교육부 방과후교실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② 건축문화 기반 관광산업 육성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③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행복청 문화도시기획팀					
3-2. 국토경관 향상								
1)경관가치에 대한 국민공감 형성	① 경관가치 인식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② 국토경관자원 발굴 및 대표경관 형성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자원과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2)경관형성·보존 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① 경관관리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② 경관행정 기반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도시재생과					
3-3. 통일 한국건축 비전 제시								
1)북한 건축문화 공동연구	① 북한 건축자산 공동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경제사회분석과					
	②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남북 공동 미래 도시건축 모색	① DMZ 공동 개발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통일부 정책기획과					
	② 남북 맞춤형 미래도시 개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 기획단 기획 총괄과/ 통일기반조성과					

2. 기본계획 성과관리체계

① 성과관리의 목적 및 원칙

- 범정부 전략 및 추진과제의 종합관리
 - 두 개 이상의 부처와 연계된 정책과제는 성과관리를 통해 해당 부처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 건축정책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통해 구현되며, 원활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

② 기본계획 실천과제에 대해 2년 주기로 성과 측정

- (국토교통부) 소관과제와 타 부처 과제, 지자체 추진과제 등에 대해 취합하고 성과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국가건축정책위에 보고
- (지자체)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과 시책을 시행하여 자체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
- (국회보고) 2년 주기로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에 대해 국회보고

《 성과관리 근거 》

- (건축기본법 제15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